

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
제2022-08호

2023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

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·훈련과정 모집 및 선정 공고

2022. 10. 13.



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

1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부산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
-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

□ 수행 근거
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(직업능력개발의 촉진)

-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(1~5호 생략)

- 6. 사업주, 사업주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

-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, 제5호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, 제5호

- ① 생략

- 3.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(이하 “우선지원대상기업”이라 한다)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

- 5.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, 연구,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, 보급 등의 사업

□ 사업 내용

- ①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사단체, 자치단체, 중기청 고용센터 등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
-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별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요조사를 실시
- ③ 공동훈련센터 선정 → 부산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
- ④ “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→ 공동교육훈련 → 인력채용” 체계로 사업 운영

□ 공동(파트너)훈련센터

○ 훈련기관별 기능

구분	기능	상호관계	지원내용
공동 훈련센터	지역 내 수요기반 맞춤형 인력양성	파트너훈련기관 선도	인프라, 훈련비용
파트너 훈련기관	공동훈련센터의 훈련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훈련공급	공동훈련센터와 협력 (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에 포함)	훈련비용

○ 공동훈련센터

【공동훈련센터 신청가능기관】

- ◆ 『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』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
- ◆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
- ◆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(방송대학, 통신대학, 사이버대학은 제외)
- ◆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
- ◆ 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(비영리기관만 해당)

-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할구역 내 소재한 훈련기관
- ‘2023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’ 등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정한 훈련 분야 관련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기관
- 훈련인프라 및 협약기업 관리 역량이 우수한 훈련기관
- ‘이행보증보험증권’ 또는 ‘지급보증서’ 제출이 가능한 기관

○ 파트너훈련기관

【파트너훈련기관 신청가능기관】

- ◆ 『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』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(공공직업훈련기관 외 지정직업 훈련시설(민간직업훈련기관)까지 포함)
- ◆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
- ◆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(방송대학, 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제외)
- ◆ 『평생교육법』에 의한 평생교육시설
- ◆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
- ◆ 『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
- ◆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□ 지원내용

○ 공동훈련센터

구분	지원 항목		지원비율	연간 지원 한도액	대응투자 (20%이상)
인프라비	운영비	인건비	80%	4억 원	필수
		일반운영비	100%		-
	훈련시설 및 장비비		80%	15억 원	필수
	프로그램개발비		100%	1억 원	-
훈련비용	훈련비용 (훈련비+수당+숙식비 등)		실시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		

※ (대응투자 면제기관) 공공기관(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 동급기관), 특별법인과 정부출연(지자체 50% 이상 출연법인 포함), 국공립대학, 공공연구기관, 상공회의소 특별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- 사업 참여기간별 지원비율

지원 항목	1~6년	7~12년	13년 이후
운영비	지원 한도액의 100%	지원 한도액의 80%	지원 한도액의 80%
훈련시설 및 장비비			지원 한도액의 50%
프로그램개발비			

○ 파트너훈련기관: 훈련비용(훈련비+수당+숙식비)만 지원

□ 2022년 부산지역 공동(파트너)훈련센터 참여현황

구분	기관명	특성화분야	사업 참여기간	비고
공동	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	기계, 공정설비 등	2014년~2022년(9년)	
	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	기계, 전기·전자 등	2014년~2022년(9년)	
	한국해양대학교	운송, 해양플랜트 등	2014년~2022년(9년)	
	부경대학교	정보통신, 건축 등	2015년~2022년(8년)	
	(재)부산디자인진흥원	디자인 등	2015년~2022년(8년)	
파트너	해당사항 없음			

2 2023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과정 모집

□ 사업기간: 공동훈련센터 선정 후 약정체결일~2023. 12. 31.까지

□ 부산지역 훈련규모

(단위: 명, 연인원 기준)

구분	계	채용예정자(양성)훈련	재직자(항상)훈련
목표인원	3,200	200	3,000

□ 부산지역 훈련비용 예산(안)

(단위: 천 원)

구분	계(100%)	정기 훈련비용(90%)	수시 훈련비용(10%)
훈련비용	2,595,440	2,335,000	260,440

※ 훈련비용=훈련비+수당+숙식비

□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

○ 채용예정자(양성)훈련: 19개 직종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
1	028 무역·운송·생산·품질 사무원	11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(운송장비 제외)
2	131 컴퓨터하드웨어·통신공학 기술자	12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
3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13	815 자동조립라인·산업용로봇 조작원
4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14	821 금속관련 기계·설비 조작원
5	140 건축·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5	824 용접원
6	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6	825 도장원 및 도금원
7	153 전기·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7	834 전기·전자 설비 조작원
8	158 소방·방재·산업안전·비파괴 기술자	18	836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조립원
9	415 디자이너	19	852 고무·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
10	621 항공기·선박·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	19개 직종	

※ 위 내용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“2022년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조사 분석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선훈련직종이며, KECO 연번 순임

○ 재직자(향상)훈련: 28개 직종

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	연번	한국고용직업분류(KECO 소분류)
1	028 무역·운송·생산·품질 사무원	15	815 자동조립라인·산업용로봇 조작용원
2	131 컴퓨터하드웨어·통신공학 기술자	16	816 기계 조립원(운송장비 제외)
3	133 소프트웨어 개발자	17	817 운송장비 조립원
4	134 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	18	821 금속관련 기계·설비 조작용원
5	140 건축·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19	822 판금원 및 제관원
6	151 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0	823 단조원 및 주조원
7	152 금속·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1	824 용접원
8	153 전기·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2	825 도장원 및 도금원
9	155 에너지·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	23	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용원
10	158 소방·방재·산업안전·비파괴 기술자	24	834 전기·전자 설비 조작용원
11	415 디자이너	25	835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생산기계 조작용원
12	621 항공기·선박·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	26	836 전기·전자 부품·제품 조립원
13	811 기계장비 설치·정비원(운송장비 제외)	27	852 고무·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용원 및 조립원
14	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원	28	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용원

※ 위 내용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“2022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조사 분석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선훈련직종이며, KECO 연번 순임

○ 4차 산업혁명 신기술분야*

① 5G+	② CCUS**	③ 기능성식품
④ 드론·개인이동수단	⑤ 미래형 선박	⑥ 바이오
⑦ 블록체인	⑧ 빅데이터	⑨ 서비스플랫폼
⑩ 스마트시티	⑪ 스마트제조	⑫ 스마트홈
⑬ 시스템반도체	⑭ 신재생에너지	⑮ 실감형콘텐츠
⑯ 의료기기	⑰ 이차전지	⑱ 인공지능
⑲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	⑳ 자율주행차	㉑ 재난/안전
㉒ 전기수소차	㉓ 지능형로봇	

주: 한국산업인력공단, 「2023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과정 선정 심사 매뉴얼」

* 중소벤처기업부, “2022~2024년 중소기업 로드맵(4차 산업혁명 분야)” 참고

** (CCUS) Carbon Capture, Utilization and Storage,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, 저장,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

○ 부산지역 지역특화산업*

- 지능정보서비스산업
- 친환경 미래에너지산업
- 라이프케어산업
- 첨단융합 기계부품산업

*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5조(<http://k-pass.kr>)

* 부산광역시, “2022년 부산지역산업진흥계획”, 2021 참고

3 2023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 기준

구분	내용		비고
① 목표 연인원	공동훈련센터별 정기+수시 목표인원(600명 이상)		- 정기: 480명 이상 - 수시: 목표인원의 20% 내외
② 협약기업	165개 이상		- 관할(부산광역시) 80% 이상, 광역(전국) 20% 이하 -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이 전체 60% 이상
③ 훈련수준별 훈련단가 지원요율	100~150% 이내		- (NCS 2~5수준) 일반과정
	100~200% 이내		- NCS 4수준 이상이고, 지역특화· 전략·위기산업 관련 분야
	100~300% 이내		- NCS 5수준 이상이고, 신기술· 4차 산업 관련분야
④ 채용예정자 훈련과정	훈련시간	720시간 이내 (1개월 이상, 월 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)	- 지역 내 훈련 수급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720시간 초과 일부 허용
	동일·유사 과정 실적 보유 기관	해당 과정 취업률 70% 이상인 훈련과정만 승인	- 훈련종료일 기준 최근 2년 (’20. 7. 1.~’22. 6. 30.)간 취업률의 산술평균 ※ 지산맞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, 훈련 기관에서 운영한 내일배움카드제 등 유사 훈련과정 취업률도 인정
	동일·유사 과정 실적 미보유 기관	채용예정자 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은 기관별 1개 과정 1회차, 600시간 이내)에 한하여 승인 가능	- 해당 분야 수요 및 향상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판단 ※ 타 분야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, 기관별 2개년 취업률이 70% 이상인 경우 적정성 판단 가능
	채용약정서	훈련과정별 계획인원의 80% 이상 채용약정서 필수 제시	- 기존 부산지역은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1개 이상 채용약정서 심사 시 제출 (2016년 이후 既 시행)
⑤ 중장년 ICT 특화과정	(정기 향상과정) 기관당 15명 이상 의무		- 훈련시작일 기준 만 45세 이상만 가능 - 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 설계
⑥ 우수 훈련기관 지원 우대	전년도 목표대비 훈련실적에 따른 차년도 훈련물량 및 예산 조정		- 목표대비 실적이 70% 이상인 우수한 훈련기관은 우대 지원 - 목표대비 실적이 70% 미만인 부진한 훈련기관은 규모 조정
⑦ 비대면 훈련	(원칙) 대면 집체훈련		- 쌍방향 훈련에 한해 집체훈련 대체 허용
⑧ 대학형 중 참여 불가 기관	’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		- 공동(파트너)훈련센터
⑨ 파트너훈련기관	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이상 보유		-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
⑩ 기타	근로기준법 등 법·규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		

□ 사업계획서 심사-공동훈련센터 선정 심사 병행 실시

- (연장심사 폐지) '23년도부터는 별도의 연장심사 없이 사업계획서 심사와 공동훈련센터 선정 심사 동시 실시
 - (공동훈련센터 선정) 규칙에 의거 「선정 취소」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*가 있을 경우, 기존 공동훈련센터라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 - 부산인자위 심사 이후 공단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
- ※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[별표 3]

□ 인프라 및 훈련비용 지원

- (인프라 지원금) 운영비는 규칙에 의거 한도 내 지원하되, 훈련시설·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 - (훈련비용) 3개년도 훈련규모(집행률, 성과평가 등)를 감안하여 지역별* 배정
 - 공동훈련센터 제시 훈련목표 및 실적, 인프라 사용계획을 심사에 반영, 실적(성과)에 따라 지원 규모 차등 적용
- ※ (부산지역 훈련비용) 2,595,440천 원

□ 지역·산업계 수요조사 기반 훈련과정 설계

- (목표인원) 공동훈련센터별 연인원은 최소 600명 이상
- (수시과정) 지역·산업계 수요에 즉각적 대응을 위해 전체 목표인원의 20% 내외로 계획
 - 부산인자위와 협의하여 심층 수요조사를 반영한 수시과정 개설 계획

□ 협약기업 비율 설정

- 공동훈련센터의 협약기업은 165개 이상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 훈련 취업률, 기업수요 맞춤 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0인 이상 협약기업은 전체의 60% 이상, 관할 지역(부산) 협약기업은 전체의 80% 이상이어야 함

4 2023년 부산지역 훈련과정 선정 기준

□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과정 선정 필수 요건

○ 우선순위 고려사항

- ① 해당 지역 과소공급 과정(훈련수요를 반영)
- ② 부산지역 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부산인자위가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과정
- ③ 취업률(채용예정자), 수료율, 전년도 훈련규모 등 실적을 반영
- ④ 4차 산업 대비 신산업·신기술 과정, 반도체·전략분야, 취약계층(중장년, 경단녀 등) 특화과정
- ⑤ IT·ICT서비스·SW개발, (정보)통신업, 콘텐츠·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
- ⑥ 그 외 정부정책 연계, 고용위기에 따른 유급휴가 훈련과정 등 훈련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훈련과정

○ NCS(국가직무능력표준) 적용 훈련과정

- ① NCS 능력단위 40% 이상 적용. 다만, '능력단위'만으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운 경우 '능력단위요소'를 포함하거나 '능력단위요소'만으로 편성하여도 인정
- ② NCS 능력단위 40% 미만으로 적용하더라도, 합리적인 요건*을 제시하는 경우 과정 인정여부 심사 예정

* 해당 직종의 NCS 미개발, 협약기업 요구사항 반영 등

○ 고품질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단가 추가 지원

- 고숙련·신기술(4차 산업*), 지역특화**·전략·고용위기 훈련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NCS 수준별 훈련단가 지원을 차등 적용

* 4차 산업 및 ** 지역특화산업은 공고문 p.6 참조

- 훈련단가는 NCS 기준단가의 100~300% 이내 지원

- ① (NCS 2~5수준의 일반과정) 100~150% 이내
- ② (NCS 4수준 이상이면서 지역특화·전략·위기산업 과정) 100~200% 이내
- ③ (NCS 5수준 이상이면서 신기술·4차산업 훈련) 100~300% 이내

□ 훈련성과 제고를위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선정

○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설 가능

① 채용예정자 동일·유사 훈련과정 실적이 있는 경우

· (1-1) (지산맞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) 해당 과정 취업률 70% 이상

· (1-2) (지산맞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) 훈련기관에서 운영한 내일배움카드제 등 동일·유사 훈련과정 취업률 70% 이상

※ (동일·유사 훈련과정 기준) NCS 소분류 기준 교과목·내용·시간 모두 80% 이상 일치하는 경우

<취업률 산술평균 예시>

· 훈련종료일 기준 최근 2년(2020. 7. 1.~2022. 6. 30.)간 해당과정 취업률의 산술평균

· 최근 2년 이내 해당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반영

② 채용예정자 동일·유사 훈련과정 실적이 없는 경우

· (2-1) (타분야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) 기관별 2개년 채용예정자 취업률 70% 이상 (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판단)

· (2-2) (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) 기관별 1개 과정(1회차, 600시간 이내)에 한하여 해당 분야 수요 및 향상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판단

○ 훈련과정별 계획인원(연인원)의 80% 이상 채용약정서 필수 제시

□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적정 훈련기간 설정

○ 훈련 수요조사 결과, 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(720시간 이내) 설정

※ (채용예정자 훈련) 지역 내 훈련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20시간 초과 과정 일부 허용

○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, 월 평균 훈련 시간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

□ '22년 지원된 프로그램개발 과정 필수 운영

○ '22년 지원된 프로그램개발비로 개발된 훈련과정의 경우, '22년도 미운영 시 '23년도에는 반드시 운영 필수

※ (부산지역) 1개 기관, 1개 과정

□ 중장년 ICT 특화과정

○ (훈련대상) 훈련 실시일 기준 만 45세 이상 중장년*

* 반드시 훈련 시작일 기준 만 45세 이상만 해당

○ (인원목표) 개별 공동훈련센터 당 최소 15명 이상 훈련 실시

* 단, 부산지역 내에서 A공동훈련센터가 B공동훈련센터 훈련물량을 소화할 경우는 B공동훈련센터는 훈련 미실시 가능(부산인자위 사전 논의 후, 승인 필요)

○ (운영방법) 정기 향상과정으로 설계하고, 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 필수

□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

- ① 부산지역에 대한 훈련 수요 공급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
- ②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부산지역 내 훈련수요나 부산지역 내 기업의 사업영역 및 주된 직무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협약기업의 근로자 등이 쉽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
- ④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능력(예: 훈련시설·장비, 훈련과정의 질, 교·강사 등)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과정
- ⑤ 해당 훈련과정의 실시계획서가 부실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정
- ⑥ 학습목표, 학습대상자 등이 구분됨에도 하나의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설계된 과정 (예: 초급·중급·고급 과정을 한 과정으로 개설)
- ⑦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, 당해 연도 내 과정의 80%를 이수하지 못하는 훈련과정
- ⑧ 공동훈련센터 선정 신청을 한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생산품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훈련과정(예: 훈련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협력기업에 판매하고 해당 협력기업 근로자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)
- 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훈련과정이나,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등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과정 등
- ⑩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타 훈련사업 심사에서 탈락된 과정

□ “사업주훈련 과정인정요건”에 부합하는 과정만 적격 처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과정은 부적격 처리 또는 과정계획 수정 요구

□ 훈련 제한 분야

- 경영·회계·사무(NCS 중분류 01~03) 등 민간훈련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한 훈련과정*은 참여 배제
 - 단, 중장년 ICT 훈련과정 중 경영·회계·사무(NCS 중분류 01~03)에 해당하는 과정은 훈련비 기준단가를 100%로 고정하여 참여 가능
 - * (예시) 간호조무사, 영양보호사(노인간병인), 이·미용, 각종 조리(요리) 과정, 제과·제빵 과정, 기초 OA 과정(엑셀, 파워포인트 등의 단순 사무관리 과정 등)
- (공통법정의무교육)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'공통법정의무교육' 과정 또는 해당 훈련과정에서 일부 훈련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

□ 훈련 운영 방식

- 대면 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훈련 활용
 - (대면 집체훈련 원칙) 훈련성과 및 질 제고를 위해 대면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격대체 훈련 허용
 - (쌍방향 훈련 대체) 플랫폼(Zoom, Skype 등)을 활용한 쌍방향 훈련에 한해 집체 훈련 대체 허용
 - 집체훈련의 훈련 품질 및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훈련생 및 교·강사에 대한 관리 철저
 - 인프라 기반 구축 및 적용 가능 훈련과정 여부 등 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

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 · 접수기간: 2022. 10. 13.(목)~26.(수) 17:00까지

-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
-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**훈련과정일람표 사전 제출 필수**
 - 제출기한: **2022. 10. 19.(수) 12:00까지**
 - ※ 기한 내 훈련과정일람표 미제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불가
 - 제출방법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메일(busanhrd@korcham.net) 제출
 - 제출내용: 2023년 부산지역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일람표

□ 제출서류

- 공동훈련센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- 공동훈련센터 신청서(원본) 및 제출 공문 1부
 - 사업계획서 제본(A, B권) 각 17부(부산인자위: 15부, 공단 부산지역본부: 2부)
 - 사업계획서 전자파일(USB) 1개(※ e-mail 제출 불가)
- 공동훈련센터 시설 · 장비 현황
 - (공통) 공동훈련센터 (보유 및 신청) 시설·장비 목록 등
- 훈련 교 · 강사 현황
 - (기준) 훈련 교 · 강사 보유 현황 및 활용 계획 등
 - (공통) 공동훈련센터와 2023년 교육훈련 계약 확인 서류 등
- 기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요청 서류 등

□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□ 접 수 처: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

6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

주요업무	상세내용	일정
'23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	○ 위원회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지	10. 13.(목)~26.(수)
↓		
모집 및 선정 심사 설명회 개최	○ 2023년 부산지역 우선훈련직종 발표 ○ 참여자격, 지원내용, 절차 및 일정 등 안내	10. 13.(목) 14:00
↓		
사업계획서 신청, 접수	○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제출 ○ 공동훈련센터는 직접 제출, 파트너훈련기관은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※ 훈련과정일람표 사전제출: 10. 19.(수) 12:00까지	10. 13.(목)~26.(수)
↓		
1차(서류 및 인터뷰) 심사	○ 서류 검토 및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※ 신규기관만 인터뷰 심사 진행	11. 1.(화)
↓		
2차(현장) 심사	○ 현장 확인 및 인터뷰를 통한 정량평가 ○ 1차 심사 탈락 시 현장심사 미 실시	11. 2.(수)~9.(수)
↓		
종합심사	○ 공동훈련센터별 훈련계획 조정 및 확정 ○ 공동훈련센터별 예산 조정 및 확정	11. 10.(목)
↓		
'23년 부산지역 지산맞 사업계획 심의·의결	○ 1~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'23년 부산지역 지산맞 사업계획 심의·의결 (제45차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총회)	11월 말
↓		
'23년 지산맞 사업계획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	○ '23년 지산맞 사업계획 심의·의결 (한국산업인력공단 심의위원회)	12월 초
↓		
'23년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	○ 훈련센터-협약기업 간 협의를 통한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(선정된 공동훈련센터 限)	2023. 1. 1.(일)~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 모집설명회

□ 일시: 2022년 10월 13일(목) 14:00~16:00

□ 장소: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

□ 참가대상: 2023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참여 희망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

□ 주요내용 및 진행순서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4:10	○ 개회 및 인사말	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,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
14:10~14:30	○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소개 ○ 2022년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 분석 결과 발표	
14:30~15:10	○ 2023년 부산지역 공동훈련센터 모집 및 참여 방법 설명 ○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설명	
15:10~15:30	○ 질의응답 등	
15:30~	○ 폐회	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별첨 1. 훈련센터 기능 및 역할, 지원내용, 심사지표 자료 각 1부
 2. 2023년도 부산지역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일람표 1부
 3. 2023년도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가이드 1부
 4. (공통) 공동훈련센터 (보유 및 신청)시설·장비 현황 목록 양식 1부
 5. (기준) 훈련 교·강사 보유 현황 및 활용 계획 양식 1부
 6. NCS - 2018 KECO 연계표 1부
 7. 부산지역 직종별 필요 훈련분야(NCS 세분류 및 직업기초능력) 1부
 8.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2022-18호) 1부
 9.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(제2022-34호) 1부
 10.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(20210426) 1부
 ※ 운영규칙 개정 진행 중, 2023년도 심사방향에 따라 별첨 1, 3 등 개정(안)에 준하여 심사진행
 11.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업무매뉴얼 1부. 끝.